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55

발의연월일 : 2020. 9. 11.

발 의 자:김경협·장철민·서영석

양경숙 · 홍성국 · 정태호

이수진 • 이형석 • 전용기

오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에 관하여 등록제도는 2006년, 열람제도는 2 008년, 공개제도는 2010년, 고지제도는 2011년에 순차적으로 도입되어시행 중에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에 대해서도 2010년, 2013년 두 차례 부칙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등록・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현행 고지제와 동일하게 성범죄자의 상세주소까지 고지하도록 규정한 반면, 등록・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현행 공개제보 다 축소된 범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까지만 공개하 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7항 삭제).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7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행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등록대상자로 결정한 자(예비등록대상자로 통보한 자를 포함한다) 및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37조에 따라열람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하되,이 법 시행 후 공개명령집행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 제5조(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집 행에 관한 적용례) ① ~ ⑥ 행에 관한 적용례)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 는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법률 제7801호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또는 법 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 37조제4항에 따라 등록 또는 열람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다만, 주소 및 실제거 주지의 경우에는 읍 • 면 • 동까 지로 한다.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